

# 이사회 심의 의결서 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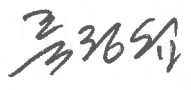
의결사항	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연기(안)
의결결과	붙임내용과 같음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18조 및 22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 
심의 의결하였음

2020년 2월 일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 장 정 태 봉 

” 부 회 장 조 상 호 

” ” 류 정 섭 

” ” 고 희 순 

” ” 김 창 국 

” 이 사 궫 회 철

” ” 김 운 환

” ” 김 미 선

” ” 김 훈 태

## 이사회 심의 의결서 Ⅱ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이	사	박주영
"	"	박찬호
"	"	신동학 신동학
"	"	김성수 김성수
"	"	오민아
"	"	이대행
"	"	이미숙
"	"	이승표 이승표
"	"	이창복
"	"	이희영 이희영
"	"	정태상 정태상
"	"	최경미 최경미
"	"	최청락

# 의 결 서

#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연기(안)

### 1. 의결주문

-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연기(안)을 아래와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-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13조(총회의 소집) 1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 2항 및 제22조(서면결의)에 의거 '코로나 19' 확산에 의한 정기대의원총회 잠정 연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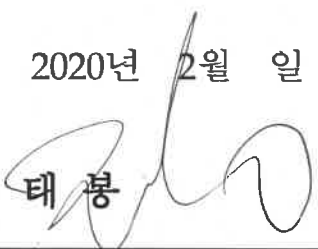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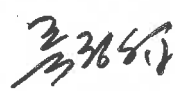


### 3. 주요내용

- 세종시 확진자 발생(2020. 2. 22) 및 감염병 위기경보가 '심각'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종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잠정연기 통보(2020. 2. 24)
-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관련안내(지역체육부-706호, 2020.02.24.)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소집 연기 관련사항 안내하도록 지침 문서 접수(2020. 2. 24.)
  - 총회는 대법원 판결 '2007도 8195'에 의해 연기는 가능 할 것으로 판단
- '코로나 19' 사태 종식 등 경과과정을 고려 추후 개최 일정 수립 후 대의원에게 통보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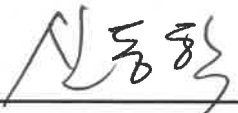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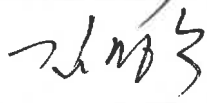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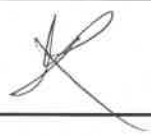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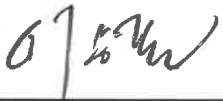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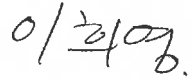


### 4. 의결사항

-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잠정 연기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.

# 이사회 심의 의결서 I

의결사항	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재산편입 및 활용계획(안)
의결결과	붙임내용과 같음
<p>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18조 및 22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년 2월 일</p>	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	회 장 정 태 봉 
"	부 회 장 조 상 호 
"	" 류 정 섭 
"	" 고 회 순 
"	" 김 창 국 
"	이 사 광 회 철
"	" 김 운 환
"	" 김 미 선
"	" 김 훈 태

## 이사회 심의 의결서 Ⅱ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	이	사	박 주 영
"	"	박	찬 호
"	"	신	동 학 
"	"	김	성 수 
"	"	오	민 아
"	"	이	대 행 
"	"	이	미 숙
"	"	이	승 표 
"	"	이	창 복
"	"	이	희 영 
"	"	정	태 상 
"	"	최	경 미 
"	"	최	청 락

# 의 결 서

##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재산편입 및 활용계획안

### 1. 의결주문

-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재산편입 및 활용계획(안)을 아래와 같이 심의·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-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2항 및 제22조(서면결의)에 의거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재산편입 및 활용계획에 관한사항을 의결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3조(기탁금의 처리) 1항에 따라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득표한 기호 1번 박순영 후보의 기탁금(30,000천원)을 본회로 귀속.
- 귀속된 기탁금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규약 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2항에 따라 본회 재산에 편입하고 체육회관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.
- 기탁금은 이전 체육회관의 인테리어 및 이사비용(20,000천원) 및 월세부족분, 각종 집기구입(10,000천원)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.

### 4. 의결사항

-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재산편입 및 활용계획(안)은 원안대로 의결함.